

대량고용변동이 예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30일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!

대량고용변동 신고 제도 안내

- (개요)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, 사업규모의 축소, 조정 등으로 **대량 고용변동***이 있는 경우, 그 변동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하여 **직업훈련, 취업지원, 고용안정 등 맞춤형 지원**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

고용정책 기본법 제33조(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) ①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,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,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(雇傭量)의 변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근로기준법」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(신고 대상) **1개월 이내 이직 근로자 수**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
- 상시근로자 **300명 미만**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→ **30명 이상**
 - 상시근로자 **300명 이상**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
→ **상시근로자 총수의 10% 이상**
- (신고 방법) 사업주는 **대량 변동 발생 30일 전**에 「대량 고용변동 신고서」를 사업장 **관할 고용노동(지)청(지역협력과)**에 신고
- * **고용보험 사이트(www.ei.go.kr)**에서도 신청 가능(기업서비스→대량고용변동신고)
 - * 이직자의 이직일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**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**에 신고
 - * 경영상 해고계획 신고를 한 경우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

대량 고용변동 신고 시 서비스 유형

이직 발생 전·후, 폐업 결정 전·후 등 사업장별 상황과 특성에 따라 맞춤지원

- ▶ **이직 전** 단계에서는 고용유지조치 등 고용조정 최소화 지원
 - 이직 후에는 실업급여, 직업훈련, 생활안정지원 및 재취업지원 제공
- ▶ **경영악화(폐업 결정 전)** 단계에서는 고용유지, 고용위기지원 컨설팅, 전직지원프로그램, 경영안정자금.사업전환지원 등 기업지원사업 연계,
 - **폐업(예정)** 단계에서는 실업급여, 생활안정용자 등 퇴직자 생활안정,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재취업 지원 집중

- (불이행 제재) 대량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**300만원 이하의 과태료**가 부과됩니다.

문의

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☎042-470-8311, 8315